국무총리 훈령 제165호

국무총리소원심의회운영규칙안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소원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2항 및 소원심의회규정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조에 의한 국무총리소원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직능) 심의회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에 제기된 소원사건으로서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로부터 심의회에 심사 요청 된 소원사건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국무총리에게 상신 한다. 이 경우, 그 의견에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과 법령의 개정에 관한 부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.

제 3 조 (부적격한 소원의 처리) 소원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원각하의 의견을 국무총리에게 상신 할 수 있다.

1. 소원제기기간을 초과한 경우
2. 소원에 관계되는 처분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
3. 소원권이 없는 자가 소원을 제기한 경우

제 4 조 (회의소집)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늦어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 ·배부한다.

제 5 조 (대리출석) 위원이 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타인을 대리 출석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안에 정통하거나 법률에 대한 소양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보완자료의 대출) 소원인 또는 처분청은 당해 소원사건의 심사가 종료되기까지는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직접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.

제 7 조 (재결상신)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당해 소원사건의 재결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·날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재결을 국무총리에게 상신 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위임전결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전결한다.

1.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원장의 이송과 보정기간의 지정
2.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행정청으로부터 국무총리에게 발송된 소원관계서류의 접수
3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·검증 ·기타 증거 조사와 관계행정청 기타 기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,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
4. 영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신청 및 보좌인 대리출석 승인
5.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원심의회의 건의의 처리
6. 영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의 연장

제 9 조 (운영세칙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